

- 4. 질 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가. 수정이유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 중학생교육원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사용료의 시설별 차등징수, 감면, 반환 등 미흡한 사항을 추가보완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의 범위 안에서 본원이나 분원별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학생교육원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과오납한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5조)
 - 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도록 함.(안 제7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조례상의 근거 없이 이미 부과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것으로 간주함.(안부칙 제2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18
----------	-----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

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노미혜 여성정책관)
- 가. 제안이유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여성발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공공시설설치조례,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 여성발전센터운영규칙의 내용 증 조례로 규정함이 타당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규정하여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1. 여성발전센터 설치근거를 모자복지법에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각 여성발전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표기함.(안 제1조 및 제2조).
 - 2. 여성발전센터의 주요기능을 교육사업, 보육사업, 취업촉진사업, 상담사업, 지역활동지원사업 및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기숙사·도서관·수영장 등)의 운영으로 정함.(안 제3조).
 - 3. 여성발전센터의 시설별·사업별 이용정원은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규모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4. 여성발전센터 이용우대자 및 이용우대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정함.(안 제6조).
 - 5. 여성발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7조).
 - 6. 기숙사 이용기간을 기술교육생 1년, 기타 7일로 하며, 기숙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안 제8조).
 - 7. 보육실 운영기간 및 시간을 정하고, 보육실 이용아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8.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실, 회의실 또는 강당 등을 교육의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9. 여성발전센터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을 정하고, 기술교육수강자중 수강료, 그 자녀에 대한 보육실 이용료 및 강당·교육실·회의실 면제대상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용료 징수기준 >

구 분	단 위	사용료등	이용기준
기술교육수강료	1인 1월	10,000원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생활문화수강료	1인 1월	10,000원	○ 1일 2시간 이내 ○ 주 1일 기준
보육실 이용료	1인 1월	7,500원	○ 1일 3시간 이내 ○ 주 5일 기준
수영수강료	1인 1월	40,000원	○ 월 20시간 이내
시설 사용 료	강당	1회1시간	10,000원
	교육실	1회2시간	5,000원
	회의실		

10. 여성발전센터의 관리·운영을 여성 또는 사회복지 관련사업이 가능한 법인 등에 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할 수 있는 여성발전센터를 서울특별시서부여성발전센터로 정하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
11.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이용정원지정, 사용료 등 부과징수 등 센터 소장에 게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를 정함.(안 제19조)
12.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이 조례로 대체하며,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중 관련규정을 부칙으로 정비함.(안 부칙 제1조 내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본 조례안은 현행 공공시설설치조례와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여성발전센터 사용료등징수조례 및 여성발전센터운영규

칙의 내용 중 여성발전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거나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조례에 상향하여 규정하여 여성발전센터의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 현행 여성발전센터의 설치 근거는 남부, 중부, 북부 등 3개소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9조에 사업소로 정하고 있고, 위탁운영중인 서부여성발전센터의 경우는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여성발전센터운영규칙에 정하고 있고,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는 등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여짐. 특히 여성발전센터운영규칙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조"는 '99. 3. 15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전문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던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조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규칙의 정비가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임.

○ 다만 안 제15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대상자를 "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규정과 달리 개념 정의가 애매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현실적으로 개인이 수탁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위탁운영 능력면에서 법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다만, 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 제17조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도록 한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용어사용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봄.

○ 또한, 안 제18조에서 정한 운영협의회와 관련하여 각 센터별로 센터의 소장이 의장이 되어 7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센터의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협의회제도는 실제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따라서, 우선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

여 위원의 일부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토록 하거나, 성격이 같은 센터 전체를 포
괄하는 협의체로 확대하여 구성 운영하는
방안 등 협의회 제도의 운영개선방안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형식적인
협의체를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 가. 수정이유
입법체계상 용어 사용이 부적절한 일부용
어를 정비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센터의 수탁가능자로 정한 “법인 등”과 안
제17조의 “법인이사회”라는 용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이를 통일을 기하고자 함.
(안 제17조)
 - 운영협의회의 위원 구성시 7인 이내로 하
되 시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25
----------	-----

2000년 7월 일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8회 정례회 제6차 문교보사
위원회
(2000년 7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규태 보건복지국장)
 -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1999. 2. 8) 및 노인복지법
(2000. 1.12)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설물에 대한 계약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개선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이미 계약된 복권판매대 등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인정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
고,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
판매기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여 계약
기간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제거
함.(안 제5조제2항 및 조례 제3181호, 제
3210호, 제3267호의 부칙 제2항).
 - 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
매기 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한 계약체결 우선순위를 모자복
지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명확히 함.(안
별표).
 - (1)1순위 : 「생활등급 1~4급」→「거택보호자」
 - (2)2순위 : 「생활등급 5~7급」→「모자복지
법 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
중 거택보호자를 제외한 자」
 - (3)3순위 : 「생활등급 8급이하」→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
록등본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제외하여 간소
화하였으며,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내에서
각 시설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월
이상 영업개시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함. 또한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계약효력의 계속 인
정에 관한 부칙 제2항 경과조치규정을 삭
제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제2항과 같이 계약기관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의 관리기관장이 정하
도록 하고, 계약 이후 임대시설물의 명도지
연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
여 1월 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경
우,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자의 실질적인 영
업권을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보임.